

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회의 2021. 3. 22.(월)

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 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이정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주민의 긴급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정방법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복지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1. 3. 11. ~ 3. 17.(5일간) /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.

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수급권자 외에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까지로 확대하였고, 안 제4조는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안 제8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본 조례안의 재정수반요인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다양한 보건·복지서비스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과 저소득층 발굴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등이 해당됨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※ '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' 비용추계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

### 3. 미첨부 사유

재정수반요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

### 4. 작성자

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강태일

**□ 「사회보장기본법」**

제6조(국가 등과 가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(소득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 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**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」**

제14조(민관협력)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